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우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교무지원팀
입학안내 : 031-770-7701~2 팩 스 : 031-772-5479
입학안내 홈페이지 : <http://admission.acts.ac.kr>



(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재외국민과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 2025

· 입학안내 : <http://admission.acts.ac.kr>

01. 아신대학교 학과 소개	· 1	
02.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주요사항	· 4	
03. 지원자격별 안내		
· 영주교포의 자녀		
· 해외근무자의 자녀		
1.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자영업자의 자녀 · 선교사의 자녀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 5
2. 정원제한 없는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 8
04. 제출서류 목록	· 10	
05.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관련 안내	· 12	
06. 전형방법 및 일정	· 13	
07. 원서접수방법	· 13	
08. 지원자 유의사항	· 14	
09. 한국어능력 관련 안내	· 17	
10.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 17	
11. 전형료	· 17	
12. 입학원서 작성 방법	· 18	
13. 학사안내(장학안내 등)	· 19	
1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21	

아신대학교 교육체계도

ACTS Educational System



01. 아신대학교 학과 소개

I. 아신대학교 소개

아신대학교는 1968년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아-태평양 복음주의 협의회와 한국 복음주의 신학운동에 뿌리를 두고 설립된 국제적이고 복음주의적이며 교회연합적인 신학대학입니다. 기독교 복음정신의 실현이라는 교육이념 아래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는, (1)신학과, (2) 기독교교육과 미디어학과, (3) 기독교상담학과, (4) 사회복지선교학과가 있습니다. 각 학과에서 신학, 기독교교육과 미디어, 기독교상담, 사회복지와 선교를 전공하면서 한국교회와 사회가 요구하는 기독교인 전문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전공에 집중하면서도 연계전공(복수전공/부전공)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다양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가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과의 교육과정 외에 경건생활훈련, 소그룹공동체 모임과 사제동행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기독교 전문인으로 성장하고 실제적인 진로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과 인성, 탁월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신대학교의 사명이고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II. 신학과

신학과는 기독교 학문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토대로 여러 신학 분야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연합적, 선교 지향적, 복음주의적 학풍과 전통을 가진 아신대학교 신학과는 한국과 아시아 및 세계 교회에서 오랜 명성을 쌓아 왔습니다. 다양한 교파와 교단 배경을 가진 신학과 교수진은 신본주의와 복음주의 이념 아래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신대학교 신학과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최선의 신학 및 신앙 공동체입니다.

※ 학위 및 졸업 후 진로 : 신학사(B.Th.) 학위 취득, 자신이 속한 교단의 신학대학원에 진학 후 목회자, 타문화권 선교사, 군목 및 특수 사역 목회자, 특정 분야의 신학자 및 교수, 청소년 사역자 및 찬양 사역자, 기독교 관련 기관 사역자, 출판 및 미디어 관련 종사자,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 다양한 국제 기구 활동가, 일반 기업 취업 및 공무원

III. 기독교교육과 미디어학과

기독교교육과 미디어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고백 및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교육과 미디어를 이해하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 및 리더를 길러내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배움의 비전 공동체입니다. 본교 교육이념(신본주의와 복음주의) 및 교육목적(아세아복음화와 세계선교) 위에서 국내외의 가정, 교회, 학교와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기독교적 인격의 성숙을 위한 기독교교육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미디어 사역 전문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 학위 및 졸업 후 진로 : 문학사(B.A.) 학위 취득,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목회자 및 선교사, 캠프 사역자,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관련 NGO 종사자, 기독교 미디어 콘텐츠 개발자/교육 미디어 개발 및 운영자, 출판 및 문화 관련 업체 종사자, 일반기업 취업, 국내외 다양한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가능, 본교 대학원(교육, 상담, 복지, 신학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혜택

IV. 기독교상담학과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마음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은 이러한 현상의 일부를 반영할 뿐입니다. 이 사회는 상한 마음을 치유할 역량 있는 상담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독교상담학과는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마음을 치유할 상담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인성과 영성 그리고 전문성을 겸비한 기독교상담사 양성을 교육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 학위 및 졸업 후 진로 : 문학사(B.A.) 학위 취득, 교회(교육전도사, 교회 상담실), 청소년상담기관(청소년수련기관, 청소년복지기관, 시도청소년지원복지센터), 상담심리치료기관(시설상담소, 상담기관), 교육기관(초등학교 상담실, 대안학교 상담실, 학원 상담실), 아카데미(방과후지역센터, 청소년공부방, 지역아동센터)

V. 사회복지선교학과

사회복지선교학과는 세계선교를 위해 세워진 아신대학교(ACTS)의 정신을 이어받아 타문화 및 다문화 사역과 사회복지를 통해 세상을 섬기는 사회복지선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 학위 및 졸업 후 진로 : 문학사(B.A.) 학위 취득, 국내외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로 취업, 타문화 선교사 파송 및 선교단체 실무자 취업, 건강가정사 취득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센터 취업, 학교사회복지사 취득 후 초중고 교육복지사로 취업, 의료사회복지사 취득 후 종합병원 의료사회복지사로 취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취득 후 정신보건 사회복지시설 취업, 본교 선교대학원 및 복지대학원 진학 시 특혜, 신학대학원 진학 (본교 및 타 교단 신대원)으로 목회자 준비

IV. 학과별 자격증 안내

전공	자격증
기독교교육과 미디어학과	① 국제기독교교사(ACSI) ②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③ Apple 국제 공인 자격증 취득 과정 (APPLE CERTIFIED PRO EXAMS) ④ ACA(Adobe Certified Associate - Photoshop, Illustrator, Premiere Pro) ⑤ 디지털영상편집 자격증(민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⑥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DIAT) ⑦ 문서실무사, 정보기술자격(ITQ) ⑧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술사
기독교상담학과	① 청소년상담사 ② 청소년지도사 ③ 기독교상담사
사회복지선교학과	① 사회복지사 2급(보건복지부) ② 사회복지사 1급 응시 가능(국가시험 합격 시) ③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응시 가능 ④ 건강가정사(여성가족부) ⑤ 국제문화교류사(IC. Intercultural Communicator) 2급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

※ 사회복지사(2급)와 건강가정사는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자격증 취득 가능 (전공 무관)

※ 상기 전공 중 일부는 관련 교과목 이수 후 해당 자격증 응시자격이 주어지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가이드 및 교육 진행

※ 합격생이 입학 이후 복수전공을 선택하여 해당 전공의 자격증 취득 또는 응시가능

02.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주요사항

1. 모집인원

구분	모집구분	모집단위	모집인원	비고
입학정원 2%이내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신 학 과	2	* 모집인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할 수 없음 (당해 모집단위별 정원의 10%이내)
		기독교교육과 미디어학과		
		기 독 교 상 담 학 과		
		사 회 복 지 선 교 학 과		
입학정원 비제한	. 해외에서 전교육과정(12 년)을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 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신 학 과	모집인원 제한없음	
		기독교교육과 미디어학과		
		기 독 교 상 담 학 과		
		사 회 복 지 선 교 학 과		

※ 모집인원 미충원 시에는 정시모집에서 선발합니다.

2. 지원자격

- 모든 지원분야는 공통적으로 신학과는 기독교 세례 교인인 자, 타학과는 기독교 출석 교인인자이어야 합니다.
- 지원자격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1-1. 재외국민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구 분	지원 자격	비고
영주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해당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근무자 (공무원,상사직원,외국정부,국제기구)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해당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자영업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에서 자영업(현지법인 근무 포함)을 하는 기간 동안, 자영업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선교사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 거주한 선교사(선교목적 체류자)의 자녀로 선교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해외 거주·체류 기간을 산정

(1)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 (가) 수업 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 기간으로 인정
- (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다)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라)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 가능
- (마)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 등 체류목적 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2)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 (가)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하였을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 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절사
 -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으로 역년으로 통산 3년(1,905일) 이상 근무

(3)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 (가)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나)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다)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4)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 (가)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1-2.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구 분	지원 자격	한국어능력시험(TOPIK)	비고
외국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고교 과정을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외국인 (복수국적자 제외)	입학 2급이상, 졸업 4급 이상 (※ TOPIK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이수 필수)	

(1) 재학기간의 기준

- (가) 수업 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 기간으로 인정
- (나) 외국 국적 취득 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다)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 가능

(2) 보호자 등의 조건

- (가)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은 학생 본인이 특별전형 자격대상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해외에서 고교 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 고교과정 3개학년 이상 이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2-1.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구 분	지원 자격	한국어능력시험(TOPIK)	비고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입학 2급이상, 졸업 4급 이상 (※ TOPIK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이수 필수)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1) 전 교육과정

(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하여야 함

(나) 해외 1개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의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다)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 <u>부족한 학교 교육과정</u> 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년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년수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2) 보호자 등의 조건

(가)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결혼이주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나)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적 및 해외에서 거주·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2-2.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구 분	지원 자격	한국어능력시험(TOPIK)	비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복수국적자 제외)	입학 2급이상, 졸업 4급 이상 (※ TOPIK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이수 필수)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1) 재학 인정

(가)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외국인학교 포함)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 부여 (복수국적자 제외)

(2) 12년 미만 학제 졸업 인정

- (가)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나)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11학년제, 12학년제의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3) 외국인 학생·보호자 등의 조건

(가)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자격 기준은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적 및 해외에서의 거주·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2-3. 북한이탈주민

구 분	지원 자격	비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1)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98조)

- (가)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 (나)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 (다) 교육감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학력인정 한다.
- (라) 또한, 각 시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98조 1항 3호)이라 한다.
- (마) 관련법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바)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 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3

지원자격 세부 안내

- (1) 외국학교 인정기준
 - (가)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2) 재학연한 인정 기준
 - (가)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나)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제외)에 정상적으로 재학하여 소정의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을 인정
- (3)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 (4)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5)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7호 적용)
- (6) 기타
 - (가) 동일 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단,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명시한 중복 수료사항은 인정 및 학기 대체가능)
 - (나)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 인정 방법은 미인정(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다) 기타의 경우는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우리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04. 제출서류 목록

※ 공통 : 학력사항기록표

※ 제출서류 확인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구 비 서 류	비고
영주교포 자녀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 성적, 재학증명서 ③ 초·중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⑥ 주민등록말소등본(또는 호(제)적 등본) ⑦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⑧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⑨ 여권 사본(부모, 학생) ⑩ 영주권 사본(부모, 학생) ⑪ 재외국민등록등본 (부모, 학생)	
· 해외 파견 근무 재외국민 자녀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근무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 기타 재외국민 (자영업자, 선교사자의자녀)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⑤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⑥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⑦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보호자), 학생) ⑧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⑨ 여권 사본(부모, 학생) ⑩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⑪ 제3국 수학인정서 (해당자) ⑫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자영업자) ⑬ 해외지사설치인증허가서 (상사직원의 자녀) ⑭ 자영업허가서 사본 또는 현지법인 등록증 사본(자영업자 자녀 해당자) ⑮ 자영업자의 3년치 해외 세금납부사실증명서(자영업자 자녀 해당자) ⑯ 선교단체장 명의의 재직증명서(선교사의 자녀 해당자, 파송일 및 현지 재직기간 명시) 	
<p>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학생본인만 외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⑤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사실증명서) ⑥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학생) ⑦ 국적상실 확인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말소 등본 또는 제적 등본) ⑧ 외국국적증명서(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⑨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⑩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2급 이상) 	
<p>·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귀화허가를 받 은 결혼이주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⑤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⑥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⑦ 국적취득확인서 또는 귀화허가통지서(해당자) ⑧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2급 이상) ⑨ 신분증 사본 	
<p>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⑤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⑥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⑦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⑧ 외국국적 증명서(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⑨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⑩ 재정보증서류(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⑪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2급 이상) 	
<p>부모 모두 외국 인인 외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③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학생) ⑥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⑦ 외국국적 증명서(부, 모, 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⑧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 ⑨ 재정보증서류 ⑩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2급 이상) 	

북한이탈주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③ 학력증명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

*** 중국내 학력취득자 입증 서류 :**

① 고등학교 졸업장(졸업증명서) 및 중국교육부 학력인증센터 발행 학력 인증보고서

② 학력 관련 인증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공증 후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중국교육부 학력 인증보고서 신청 방법 (인증서 발급까지 약 30일 소요, 아래 지정한 사이트 이외의 학력 인증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1. 학력인증기관 :

- 교육부 학위 및 연구생 교육발전센터 (教育部学位与研究生教育发展中心) : www.cdgdgc.edu.cn
- 문의 : 이메일주소 : cgv@cdgdgc.edu.cn / 전화번호 : +86-10-8237-9480

2. 한국에서 인증보고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

- 한국 내의 공식 업무대리기관인 서울공자아카데미 : <http://www.cis.or.kr/main.htm/> → 중국학력인증센터
- 문의 : 이메일주소 : cis88@cis.or.kr / 전화번호 : 02-554-2688

※ 재정능력 입증서류

- ① 미화 \$20,000 이상의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부모)의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예치) 또는 미화 \$20,000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②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 입증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 ③ 가족관계증빙서류(호적등본 등 : 외국인의 경우 외국정부가 발행한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증명서. 중국인의 경우 가족사항이 기재된 호구부, 거민신분증)

※ 국가별 가족관계증빙서류 (예)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 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올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엔),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크·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05.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관련 안내

1. 서류 제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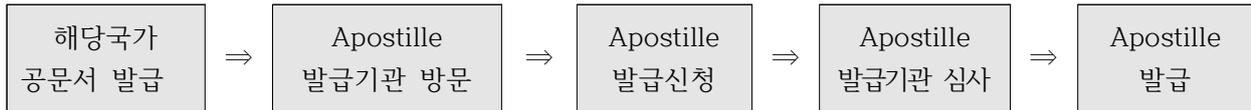
지원자는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 번역하여 해당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비체약국)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의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www.0404.go.kr 참고) 단,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관련 참고사항

- (1)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07.7.14.부 우리나라에 발효)
- (2) 협약 가입국 간 공문서의 원활한 상호 인증을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함
- (3)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

3.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 (1) 공문서 (국.공립학교 등)



- (2) 사문서* (사립대 등)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면 아포스티유 확인 가능

06.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구분	전형 방법	비고
전체 전형	면접 100%	

- ※ 성적반영항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모집정원 내라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면접고사에 불응시하거나 불합격 처리 시, 최종 불합격 처리합니다.

2.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원서교부	2024년 08월 12일(월) ~ 09월 13일(금)	입학홈페이지 다운로드 http://admission.acts.ac.kr
서류접수 및 원서접수	2024년 09월 09일(월) ~ 09월 13일(금) 10:00 ~ 18:00	우리대학 교무지원팀
첨부서류 제출	- 지원 전형유형 제출서류(모집요강 참조) - 등기우편제출 : 2024년 09월 09일(월) ~ 10월 04일(금) (10월 04일 우체국소인까지 유효) - 직접제출 : 10월 04일(금) 18:00까지 방문	우리대학 교무지원팀
전형일 (면접고사)	2024년 10월 18일(금) 10:00	우리대학(경기도양평)
합격자 발표	2024년 11월 01일(월) 11:00	입학안내 홈페이지
등록일자	* 온라인문서등록 : 2024년 12월 16일(월) ~ 18일(수) 16:00까지	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등록
	* 최종 등록 : 2025년 02월 10일(월) ~ 13일(화) 16:00까지	합격자별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및 지정 등록장소

※합격자는 '온라인문서등록'과 '최종등록'까지 반드시 마쳐야 입학이 가능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07. 원서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1. 서류접수 : <제출서류 목록>의 해당사항 참고

※ 외국공문서(증명서)는 해당국가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스티유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후 받아 제출합니다. (www.0404.go.kr 참고) 단,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원서접수 : 입학원서, 출석교회 담임(지도)목사추천서(신학부), 학력사항기록표, 기타 제출서류

접수처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아신대학교 본관 101호 교무지원팀 전화 : (031) 770-7701~7702 팩스 : (031) 772-5479
-----	--

3. 우편접수는 제출서류 일체(수험표 및 부분 포함)를 우편발송 후 원서접수 기간 중 입시 사무실에 반드시 전화하여 우편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수험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우편발송 후 확인을 하지 않고 수험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우편물 분실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8. 지원자 유의사항

[복수지원 관련 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함. 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형은 지원횟수에 제한없음
- 정시모집 지원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모집기간 군의 제한 없음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나, 다만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서만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학, 전문대학 합격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은 무효로 함

[필수확인사항]

<대입 지원 위반 안내 확인>

- 수시모집에서 합격자(최초, 충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 최초 합격자나 충원 합격자는 정시 모집 또는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또는 온라인문서등록) 납부도 정식등록으로 처리), 수시모집 등록예치금(온라인문서등록)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전형일자 확인>

- 대입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안내 확인>

- 수험생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① 6회 지원이란 수험생이 대입원서를 6번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 ② 산업대,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경찰대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③ 수시모집(대학에서 분리 실시하는 1차 및 2차)의 모든 전형에 해당함. 재외국민 전형(모집정원의 2% 정원의 선발), 본인만 외국인, 초·중등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속한 모든 전형이 수시모집 지원횟수의 계수 대상임. 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전형은 제외
- ④ 수험생이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 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⑤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대학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음

1. 우리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복수지원이 불가합니다.
2.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3.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처리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무효됩니다. (모집정원의 2%를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하는 재외국민전형과 초중등 전교육과정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본인만 외국인 등 '재외국민과 외국전형'에 속한 모든 전형이 수시모집 지원횟수의 계수 대상임. 단, 부모 모두 외국인 전형만 제외)
4. 우편에 의한 접수를 포함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17:00까지 우리대학교에 원서가 접수되어야 하며, 지원

자는 서류접수 여부를 우리대학교 입시 사무실(031-770-7701~2)에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지원자는 지원 자격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지원하여야 합니다.
6.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 번역하여 해당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www.0404.go.kr 참고) 단,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본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하여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접수된 지원서는 지원사항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전형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대학의 귀책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9. 최종 합격자라도 이미 제출한 서류 등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 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11.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 위조 및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이미 등록을 하였다라도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12. 전형일에는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사진이 나온 학생증 중 택일)을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 시에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13. 전형일에는 출신고교 교복, 배지 등 출신고교를 알 수 있는 복장을 하면 안됩니다.
14. 전형일에는 코로나19 감염증 등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가격리, 확진을 받은 자, 전형일 당일 발열 등 전염병 유증상을 보이는 자는 우리대학을 방문하지 말고 교무지원팀에 즉시 연락을 해야 합니다.
15. 전형일에는 휴대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16.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17. 제출서류 이외에도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 학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성경적인 교리를 신봉하거나 선전하는 자는 입학을 불허합니다.
 - ① 개신교단에서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회 또는 타종교에 교인으로 등록되었거나 출석하는 자는 우리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② 기성교회 목회자의 추천을 받은 자라도 이단교회 및 타종교에 교인으로 등록되었거나 출석하고 있는 자는 우리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③ 이단교회 및 타종교에 등록한 것 또는 출석을 숨기고 입학을 하더라도, 입학 후 이단교회 및 타종교 출석 사

실이 밝혀지면 제적처리 됩니다.

17. 우리대학교 정원 외 특별전형 입학자는 학부(모집단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18.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또는 입학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19. 대학 입학전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수험생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제32조1(이의신청처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09. 한국어능력 관련 안내

1.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외국인, 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 전형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2. 한국어능력
 - 입학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자 (단, TOPIK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이수 필수)
 - 졸업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 미취득시 졸업자격 미달 처리함

10.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1. 등록포기

- (1)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 가능하고 최초합격 및 충원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 (2) 이중등록 및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 대학에 등록한 자가 타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타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등록포기각서 및 등록금반환신청서)는 우리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 등록금 환불

- (1) 등록금환불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우리대학교 입시 사무실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등록포기(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 포기를 표시한 경우) 등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근거」에 따라 처리합니다.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학기 개시일 이전에 입학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자를 등록포기자로 처리하고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11. 전형료

1. 전형료

구분	전형료
재외국민과 외국인	80,000원
북한이탈주민	52,000원

※ 우편접수시 우체국에서 소액환으로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에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2022년 09월 27일(화)(우체국 소인까지 유효)까지 입학전형료 반환 신청서와 해당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 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 전액을 반환합니다. (자격인정 및 제출서류는 수시모집요강 기획균형선발전형 안내 참조)

2. 전형료 반환 안내

(1) 법 제34조의4제 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 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④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2) 우리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를 반환할 예정입니다. 전형료 반환은 2023년 4월 30일 이전 우리대학교가 공지한 반환기간에만 반환합니다.

(3)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① 우리대학교 방문
 - ②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이체 수수료 차감 후 반환)
- (4) 반환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금융기관 전산망 이용에 드는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예정이며,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 (5) 전형료 반환 정보 기재 오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반환대상자의 책임이므로, 이 경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2. 입학원서 작성방법

1.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연필제외)로 해당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등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2. 입학원서, 입학원서 부분, 수험표 및 접수증의 기재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기재 사항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입학원서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3. '*'표시가 된 란은 우리대학교에서 기재하는 란이므로 지원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항목별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원구분은 신입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2) 지원자격은 "① 외국영주교포자녀, ②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③ 선교사 자녀" 등 중 해당되는 란에 체크(✓)하

여야 합니다.

- (3) 성명(한글, 한자, 영어), 국적,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명시된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4) 연락처는 입시기간 중 수험생에게 긴급히 연락이 가능한 수험생 본인이나 보호자(부모)의 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5) 지원자의 학력사항은 국내학교과정에 해당하는 초·중·고·대학 과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재학 기간은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6) 국내해당 과정과 정규여부(학력인정교)는 출신학교에 확인 후 기입하여야 합니다.
 - (7) 가족사항 란의 보호자는 영주(근무)기간 내에서 영주(근무)국에 실제 체류기간을 기입하고, 지원자는 영주(근무)국에서의 실제 체류기간을 기입합니다. 제3국 수학 시에는 해당 수학 국에서의 실제 체류기간을 같은 란에 별도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 (8) 출입국 사실란은 출입국가, 일자, 기간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된 서류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지원요건에 맞는 기간만 기재 합니다.
 - (9)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 따라 전형료 반환 은행계좌를 기재합니다.
 - (10)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5. 학력사항기록표 서식을 원어 및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학사안내

I. 생활관(기숙사) 안내

1. 입실자격

입사인원	00명(신입생 및 재학생)
입사자격	신입생, 외국인 학생, 지방에 거주하는 원거리 거주 학생을 우선배정 ※ 합격한 신입생이 입학 후 생활관 입사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함
선발방법	생활관 규정에 따름

2. 신청안내

- 생활관(기숙사) 입사신청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생활관 사무실로 문의[031-770-7789~7790]

II. 장학금 안내 (현황기준일: 2024. 03. 01.)

● 국가 장학금

명칭	장학금액	선발기준	지급요건		비고
			취득학점	백분율점수	
국가장학금 I유형	수업료 전액 ~ 175만원	한국장학재단 심사 후 소득분위 0분위~8분위 이내	15학점이상 (4학년12학점)	80점이상	

● 교내 장학금

명칭	장학금액	선발기준	지급요건		비고
			취득학점	백분율점수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수시모집)	30만원	각 학과별·입학성적(총점) 최우수자(내신2등급이상)			중복수혜 가능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4년	수능 반영 영역의 평균등급	15학점이상	91점이상	

(정시모집)	수업료 전액	1등급 이내인 자	(4학년12학점)			
	2년 수업료 전액	수능 반영 영역의 평균등급 2등급 이내인 자				
	1년 수업료 전액	수능 반영 영역의 평균등급 3등급 이내인 자				
지역 신입생 장학금	20만원	양평지역 거주 또는 양평군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5학점이상 (4학년12학점)	80점이상	신입생 중복수혜 가능	
대안학교 출신자 장학금	100만원	국내 대안학교 졸업(예정)자	15학점이상 (4학년12학점)	80점이상		
다문화 가족 장학금	50만원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15학점이상 (4학년12학점)	80점이상		
선교사 자녀 장학금 [MK 장학금]	수업료 전액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선교사 자녀	15학점이상 (4학년12학점)	80점이상	국가장학금 포함	
교역자 자녀 장학금	20만원	교역자 자녀(5분위이상)	15학점이상 (4학년12학점)	80점이상		
교역자녀 가계곤란 장학금	30만원	교역자 자녀 중 소득분위 0분위~4분위				
동문자 자녀 장학금	50만원	본교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 자녀				
형제/부부/부자 장학금	82만원	본교 대학 또는 대학원에 함께 재학하는 자				
교직원자녀	수업료 전액	본교 대학 교직원 자녀				
교직원형제	수업료 50%	본교 대학 교직원 형제, 자매				
한마음장학금1	50만원	중증(1급 ~ 3급)				12학점이상
한마음장학금2	30만원	경증(4급 ~ 6급)				
한마음도우미 장학금	40만원	장애학생이 추천한 학습도우미	학점, 성적 무관			
한마음 부모장학금	50만원	장애등급 1급 ~ 5급 (0분위 ~ 3분위)	15학점이상	80점이상		
일반가계곤란장학금	소정금액	국가장학금 1유형 대상자	15학점이상	80점이상		
교외가계곤란장학금	외부후원	가계곤란 장학금	15학점이상	77점이상		
언어특기자 장학금	A등급	120만원	취득후 2년이내 1학기 2개 자격증으로 신청불가 1회성 포상장학금(중복가능)	15학점이상	80점이상	
	B등급	80만원				
	C등급	50만원				
외국인학생 장학금 TOPIK취득(건보가입)	50만원	순수 외국인학생	15학점이상	79점이상		
영어성경암송1	전액장학	요한복음 1~21장 암송(NIV)	학점무관	성적무관		
영어성경암송2	150만원	10장 이상 제일 많이 외운 학생				
국가보훈(본인 및 배우자)	수업료 전액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	학점무관	성적무관		
국가보훈(자녀) 장학금	수업료 전액	학교50% / 정부50%		70점이상		
국가보훈(제대군인)	수업료 50%	정부 50% (8학기 지급)	학점무관	성적무관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수업료 전액	입학,편입시 만34세이하/ 6년 범위내에서 8학기 / 2학기 연속70점미만시 면제안됨		70점이상		
사생회동장	20만원	생활관 임원 활동장학금	학점무관	성적무관	경건무관	
사생회생활관비전액장학금	실비	사생회장1명, 총무1명, 서기1명 회계1명, 동장6명, 예배3명				
명칭	장학금액	선발기준	지급요건		비고	
			취득학점	백분율점수		
성적 수석 장학금		수업료 전액	각 학과별 성적 수석자	15학점이상 (4학년12학점)	89점이상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1	2,933,000 (10명 미만일 때 지급)	각 학과·학년별 성적 우수자	15학점이상 (4학년12학점)	89점이상	
	성적2	1,898,000 (10-19명일 때 지급)				
	성적3	1,466,000 (20-39명일 때 지급)				
	성적4	100만원 (40명 이상일 때 지급)				

	성적5	80만원 (50명 이상일 때 지급)			
학생활동 장학금	총학생회 회장	2,700,000	학생활동에 해당하는 자	15학점이상 (4학년12학점)	80점이상
	부총학생회 회장(주,야)	2,200,000			
	총학생회 총무	1,500,000			
	총학생회 국장	600,000			
	총학생회 부장	550,000			
	총학생 차장	250,000			
	학과 학생회 회장	400,000			
	학과 학생회 부회장	300,000			
	사생 회장	1,300,000			
	사생회 총무	700,000			
	사생회 회계	200,000			
	사생회 동장	200,000			
	졸업준비위원장	300,000			
	졸업준비위원 총무	200,000			
	동아리연합회장	450,000			
	동아리연합회총무	250,000			
	동아리연합회회계	150,000			
	동아리연합회서기	150,000			
	방송국장	1,000,000			
	방송국 정기자	200,000			
방송국 엔지니어	300,000				
교지편집장	1,000,000				
교지편집기자	200,000				
멘토멘티 장학금	50만원	멘토활동한 후 보고서 제출학생	학점, 성적, 경건무관		

14.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과정에서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처리되며 그 과정에서 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기재된 수집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1개), 이메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 학번호), 신급, 출석교회정보, 전형구분, 모집단위(지망학부)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선택)>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추가전화번호(2개), 환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 합격자의 경우, 학적자료로의 이관에 따라 일부 자료가 영구적으로 보유 및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전형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보주체 외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감염예방법(제6조4항) 및 재난안전법(제74조의3항),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1항3호)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로부터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수집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리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권리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권리 거절 사유: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안내>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하시는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	성명,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검정고시 대입전형 자료 온라인 추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격정보, 과목성적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방법위반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위반자에게 통보	모집시기, 성명,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수험번호, 대학코드, 합격/예치금구분(온라인문서등록구분), 접수장소, 접수일자, 지원결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과,전형유형,모집단위명,계열코드,출신고교코드,출신고교유형코드,졸업연도,등록일자구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시 모집 지원 횟수 검색 및 통보	대학코드,모집시기,수험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모집단위명,접수시간,접수장소,합격여부,예치금납부여부(온라인신청등록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 주의 : 당해 학년도를 포함하여 9년 이상 된 수험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해당 대학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제공 불가).				

※ 제출서식은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제출서식]에서 다운받아 지원하시면 됩니다.